

농기계부품 통일· 단순화명령품목 지정 확대

자본재과 박완용
02) 509-7277 wypark@ats.go.kr

1. 배경

농기계부품에 대한 호환성을 높이고 부품을 공용화함으로써 제조업체는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절감 및 부품의 개발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으며, 농민들은 고장수리시 부품의 확보 용이, 장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통일· 단순화 명령품목으로 품목지정을 확대함

3. 명령대상자 :

위 품목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자(가공업자 및 조립업자 포함)

4. 준수사항 :

명령대상자는 위 품목을 제조(가공 및 조립업자를 포함)할때에는 적용규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
5. 적용제외 대상품목 :

수출용 및 수입품인 경우

2. 명령품목 및 적용규격

6. 시행일자 : 2004. 10. 1

완제품	품목명	적용규격	명령발효일
농업용 트랙터	스핀온형 오일필터	KS B 7935의 제3항	2004. 10. 1
	스핀온형 유압오일필터	KS B 7936의 제3항	
	PTO동력전달축의 십자저널의 치수	KS B 7937의 제4항	
	PTO동력전달축의 마찰식클러치디스크의 치수	KS B 7938의 제3항	
자탈형 콤팩트	스핀온형 오일필터	KS B 7935의 제4항	

※ 통일· 단순화명령품목 기지정 품목수 : 41품

